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4.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2212310)	2025.08.2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6. 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김승원의원 (2212960)	2025.09.1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5.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6. 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03.24.)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 2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3.26.)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3월 대형 산불 발생 시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확산 중인 곳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대피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5항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다.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수립된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그 정보를 재난 예보·경보·통지에 포함하도록 그 실시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후단 중 “있다”를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31조의2제5항의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한 경우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피장소의 인력 배치

등 대피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 ④ (생략) <신 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	제40조(대피명령) ① ----------

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31조의2제5항의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한 경우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대피방법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피장소의 인력배치 등 대피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